

증권계좌개설 대행업무 제휴계약서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품의완료후 즉시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~ 제24조 (내용생략)</p> <p>제25조(효력의 발생) ① (내용생략) ②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</p> <p>제26조 ~제27조 (내용생략)</p>	<p>제1조 ~ 제24조 (좌 동)</p> <p>제25조(효력의 발생) ① (좌 동) ②<u>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"은행"은 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"증권"에 통지한다</u> ③<u>제②항의 통지에는 "증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다.</u> ④<u>"증권"이 제②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"연장을 원하지 않음"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.</u></p> <p>제26조 ~제27조 (좌 동)</p>	<p>금융감독원약관 변경권고사항 반영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